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2. 조치일 : 2023. 7. 19.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검사착수일(2023.3.6.)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75개의 STR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가 파악·관리하는 추출기준의 정의와 시스템상 코드(조건)가 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데이터 형태와 다르게 설계되거나 의심거래 검토 범위 설정 등이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출기준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운영 불합리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FIU)에 보고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의심거래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 STR Alert 발생 이후 의심거래 보고여부 검토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담당자의 검토나 보고책임자의 결재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검토·분석이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음

㈏ 보고책임자의 결재가 형식적으로 수행된 경우가 있으며, 보고책임자의 결재일자 및 FIU 보고일자가 AML업무시스템상 관리되고 있지 않아 보고기한 준수를 위한 통제가 미흡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FDS)과 거래모니터링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보험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담당자가 매월 수기로 STR 임의보고를 수행하고 있어 누락 또는 지연 우려가 있음

㈑ STR 추출기준 및 보고제외사유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해당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유형의 거래에 대해 다르게 검토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정상거래'로 기재하는 등 일부 보고제외사유 검토가 미흡함

(3) 고액 현금거래 보고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추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을 적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추출기준(CTR Query) 및 DB를 개선하시기 바람

㈎ 현금거래가 아닌 일부 거래가 DB상 '현금거래'로 분류되어 CTR 보고대상으로 잘못 추출되고 있음

㈏ CTR 보고대상에 대하여 계약자만을 기준으로 합산하도록 추출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지급·영수인에 대한 CTR 보고 대상 추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4)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회사는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위험, 고객위험(고객유형), 거래위험(상품 및 서비스 위험)에 따라 고객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객확인에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고객위험평가모형 관련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회사 자체적으로 고객위험평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이 내규 등이 아닌 시스템으로만 반영되어 있어 업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동 모형 구축 이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등이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고객위험평가를 고객기준이 아닌 보험계약기준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 고객의 고객위험평가 결과가 계약별로 상이할 수 있어 고객별 위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5) 주기적인 고객확인 이행 미흡

내규 등을 통해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고객확인 재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규 규정과 달리 위험도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고객확인 주기를 적용하여 고객확인 재이행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객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전사적 위험평가 운영 불합리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을 고유위험 및 운영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수준 등을 평가(RBA)하고 있으나

고유위험 및 운영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이 미흡하여 위험평가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전사 위험평가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의 평가항목,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내규 또는 업무매뉴얼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사 위험평가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